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경 과

가. 발 의 자 : 김희걸 의원 (찬성자 16명)

나. 의안번호 : 제 329 호

다. 발의일자 : 2019. 1. 22.

라. 회부일자 : 2019. 1. 23.

## 2.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성장발달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골자

가. 조례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라. 안전 및 위생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마.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발생한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

하기 위한 안전의무 이행을 정함(안 제5조)

바. 어린이놀이시설 실태조사 실시 후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행정지도를 정함(안 제6조)

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아. 표창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원안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 개 요

- 본 제정안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제2조의2<sup>1)</sup>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동 제정안은 이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참고로, 이세열 의원이 2018.11.27일 동일한 취지로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바, 본 김희결 의원 안(의안번호 제329호)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표] 제정안 구성

이세열 의원 안(제267호)	김희결 의원 안(제329호)	비고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 1)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위생점검)	제4조(안전점검 등)	
	제5조(안전의무의 이행)	
제5조(점검결과 조치)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제7조(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등)	제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	
제8조(표창)	제9조(표창 및 포상 등)	
제9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 ■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 및 안전관리 현황

-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은 2019년 1월말 기준 총 8,612개소로 주택단지(5,701개소), 도시공원(1,531개소), 어린이집(995개소) 등에 설치되어 있음([표] 참조).

[표]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구분	계	목욕장업소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의료기관	주택단지	놀이제공업소	주상복합	박물관	종교시설	하천	공공도서관
개소	8,612	16	1,531	97	43	995	35	7	5,701	108	32	2	36	5	4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고기록대장의 작성 및 배부 등을 종합관리토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감독 행정기관의 장으로 학교, 유치원, 학원의 경우 교육장이 되고 그 외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됨.

-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매년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지도·점검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점검하면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이면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써 정기적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필요 시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등 직접적인 안전관리 책임이 있음([표] 참조).

[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

구 분	내 용	근 거	위반시 벌칙및 과태료
정기시설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함	법 제 12 조 제 2 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합격의표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법 제 12 조 제 4 항	-
검사불합격 시설 이용금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 이용금지	법 제 13 조 제 1 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 이용금지	법 제 13 조 제 2 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점검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 실시	법 제 15 조 제 1 항	과태료 1회 : 50만원 2회 : 100만원 3회 : 500만원
안전진단 신청 (필요시)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이용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법 제 15 조 제 1 항	과태료 1회 : 40만원 2회 : 80만원 3회 : 400만원
놀이시설의 이용금지·폐쇄·철거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 금지·폐쇄·철거 시 출입금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에 통보	법 제 16 조 제 5 항	-
안전점검 결과 기록, 보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기록 보관	법 제 17 조 제 1 항	과태료 1회 : 30만원 2회 : 60만원 3회 : 200만원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변경 및 시설물 인도 후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재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받도록 해야 함	법 제 20 조	과태료 1회 : 30만원 2회 : 60만원 3회 : 200만원

보험가입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법 제 21 조	과태료 1 회 : 30 만원 2 회 : 60 만원 3 회 : 200 만원
중대사고 발생보고 (보고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할 관리감독기관에 통보	법 제 22 조 제 1 항	과태료 1 회 : 30 만원 2 회 : 60 만원 3 회 : 200 만원
보고, 검사, 답변	관리감독기관 요청 시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 제출 및 보고를 해야 함	법 제 23 조	과태료 1 회 : 30 만원 2 회 : 60 만원 3 회 : 300 만원
불합격시설 시설개선보완명령	불합격시설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결과 시설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보완명령 수용	법 제 13 조 제 4 항	과태료 1 회 : 50 만원 2 회 : 100 만원 3 회 : 500 만원
물놀이형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물을 활용하는 기간 안전요원 배치	법 제 15 조의 2	과태료 1 회 : 40 만원 2 회 : 80 만원 3 회 : 400 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시 시설개선보완명령	관리감독기관 지도·감독 시 안전이 미흡한 시설에 대한 보완명령 수용	법 제 17 조의 2 제 3 항 및 제 5 항	과태료 1 회 : 50 만원 2 회 : 100 만원 3 회 : 500 만원

-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며, ‘19년 1월 말 기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12개 기관<sup>2)</sup>이 등록되어 있음.
- 한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는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진단이 있는데, 검사 종류에 따라 신청주체, 검사기관, 검사시점/주기, 검사내용 등이 상이한 부분이 있음(〔표〕 참조).

2) ①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②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③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④대한산업안전협회, ⑤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한국시험검사기술원, ⑥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⑦KOTITI시험연구원, ⑧안전모니터봉사단중앙회, ⑨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사회적협동조합 한국안전검사연구원, ⑩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 ⑪FITI시험연구원, ⑫국민재난방지협회

[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검사

구분	신청자	검사기관	신청주기/시점	검사내용	근거
설치검사	설치자	안전검사기관	설치한 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기준 및 시설기준	법 제11조, 제12조
정기시설검사	관리주체	안전검사기관	2년에 1회/설치검사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기준 및 시설기준	법 제12조, 영 제8조
안전점검	관리주체(=점검주체)		월 1회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 연결상태, 노후정도, 변형상태, 청결상태, 안전수칙 등의 표시상태, 부대시설의 파손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여부	법 제15조, 영 제11조
안전진단	관리주체	안전검사기관	안전점검 결과 위험을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기준 및 시설기준	법 제16조, 영 제16조

## ■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사고발생현황

- 행정안전부 2018년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놀이시설 내 안전사고는 총 286건으로 전년대비로는 34건(11.2%)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표] '18년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출처: 행정안전부)

구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고건수	286	6	59	5	5	1	2	7	12	151	3	2	9	4	1	8	7	4

- 2018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사고기록대장 상 서울시 사고건수는 총 6건([표] 참조)으로 2016년 이후로 감소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그림] 참조)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안전사고 위험성은 항시 내재되어 있다 할 수 있음.

[표] 2018년 서울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사고(출처: 행정안전부)

번호	나이	놀이 기구	위해 내용	손상부 위	사고 일자	설치 장소	사고 지역	사고내용
1	12	조합 놀이대	골절	가슴/ 등	11.23	학교	서울 강동	미끄럼틀 끝부분에 안자 있다 빠르게 내려오는 아동과 충돌해 골절
2	9	조합 놀이대	골절	팔/손	07.05	학교	서울 송파	점구름사다리에서 손이 미끄러져 추락해 오른 팔 골절
3	6	조합 놀이대	골절	팔/손	08.22	주택 단지	서울 서대문	정글짐 부분에서 추락해 팔 골절
4	7	조합 놀이대	골절	팔/손	07.06	주택 단지	서울 관악	밧줄을 잡고 건너다 놓쳐 추락해 골절
5	9	그네	골절	팔/손	06.16	주택 단지	서울 영등포	2명이 함께 그네를 이용하다 추락해 골절
6	12	그네	골절	팔/손	05.20	주택 단지	서울 은평	그네상부 잠자리 조형물에서 놀다가 조형물과 함께 추락해 골절



[그림]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사고 발생건수



## ■ 타 자치단체 조례 설치 현황

- 전국 자치단체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조례가 설치된 곳은 총 230곳이며 이 중 9곳<sup>3)</sup>이 광역자치단체, 14곳<sup>4)</sup>이 교육청, 나머지 207곳이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해당함.
- 서울시의 경우 성동, 중랑, 도봉, 관악, 서초를 제외한 20개 자치구와 교육청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관련 조례를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음.
- 본 조례안의 경우 서울특별시장과 관리감독기관의 장인 자치구청장, 그리고 관리주체 각각이 이행해야할 사항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자치구 간 관리감독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음.

## ■ 조례안 주요골자별 검토의견

### 1) 제명

- 동 조례안 제명은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로 하고 있는데,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인 구청장이 안전관리의 직접적인 주체인 점을 감안할 때 시장은 지원 성격이기 때문에 제명의 “안전관리”를 “안전관리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3)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4)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표] 안 제명 수정안

본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u>지원</u> 조례」

[표]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례현황

지방자치단체	조례명	조항	비고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유지지원)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6조(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유지 지원) 제7조(지원범위) 제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의 지원) 제9조(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등)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4조(지원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금액 등)	
경기도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의 지원)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전라북도	전라북도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의 지원)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전라남도	전라남도공동주택내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조례	제4조(지원기준)	
경상북도	경상북도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	제6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의 지원)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 제8조(어린이놀이시설의 균형 지원)	
경상남도	경상남도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의 지원) 제4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 제5조(어린이놀이시설의 균형 지원)	

##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 대한 용어정의를 하고 있는데, 법 제2조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시장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표] 안 제2조 수정안

본 조례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생략)</li> <li>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li> </ol>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제정안과 같음)</li> <li>3. “<u>관리감독기관의 장</u>”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li> <li>4.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li> </ol>

###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안 제3조)

- 안 제3조제1항은 시장이 ‘2년 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자치구청장 또는 교육장)이 ‘매년’ 수립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과는 별도로 상위의 안전관리계획을 격년 단위로 수립하려는 것으로,
- 서울시 차원에서의 거시적 안전관리 정책을 펼 수 있다는 점과 자치구간 통일성 있는 안전관리 행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음.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 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4.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청장이 관리·감독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안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 및 보건위생까지 입법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됨.

- 다음으로, 안 제3조제3항은 시장에게 구청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시장으로서 법 제2조의25)의 이행과 자치구가 범할 수 있는 안전관련 오류 및 누락 등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음.
- 안 제3조제4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임.

#### 4) 안전점검 등(안 제4조)

- 안 제4조는 관리주체가 월 1회의 안전점검 의무이행과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제4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련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참고로, 영 [별표 6]은 안전점검 항목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 상태’, ‘노후 정도’, ‘변형 상태’, ‘청결 상태’, ‘안전수칙 등의 표시 상태’,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5)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5) 안전의무의 이행(안 제5조)

- 안 제5조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리주체의 안전의무 이행 및 그와 관련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5조(안전의무의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발생한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필요하면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여기서, 안 제5조제2항에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이 불가할 경우에는 지정된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도 부재할 뿐만 아니라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자원봉사자는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됨.

[표] 안 제5조 수정안

본 조례안	수정안
제5조(안전의무의 이행) ① (생략)	제5조(안전의무의 이행) ① (제정안과 같음)

본 조례안	수정안
<p>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라 지정된 <u>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자</u>를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② ----- ----- <u>대리인</u>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p>

## 6) 점검결과 조치 등(안 제6조)

- 안 제6조는 안 제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 결과에 대해 관리주체(소유자), 관리감독기관의 장(구청장), 시장이 취해야할 조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여기서, 제1항과 제2항은 법 제15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조치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제3항의 경우 시장에게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지도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 이는 제2항의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법정 지도·감독 권한과 중복되면서 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측면에서 지원하는 형태인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필요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그 밖에, 제1항 중 “실태조사”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으로 그리고 제2항 중 “관리감독기관은”의 용어

통일을 위해 “관리감독기관의 장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표] 안 제6조 수정안

본 조례안	수정안
<p>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u>제4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p> <p>② <u>관리감독기관은</u>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u>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u></p>	<p>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 <u>제4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 결과가 -----</u></p> <p>-----.</p> <p>② <u>관리감독기관의 장은</u> -----</p> <p>-----.</p> <p>③ ----- <u>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필요시 지원할 수 있다.</u></p>

##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안 제7조)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하여 관리·감독 및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 제7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및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7조제1항은 법 제18조제1항6)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 제2항에서 시장에게 필요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 시스템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정보를 등록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때,
- 이들 정보를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관리감독기관의 장’, 즉 구청장이 활용토록 하는 것이 현실과 부합된 방안이라 사료되는 바, “시장은”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표] 안 제7조 수정안

본 조례안	수정안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생략) ② <u>시장은</u>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생략)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제정안과 같음) ② <u>관리감독기관의 장은</u> ----- ----- ----- -----. ③ (제정안과 같음)

- 다음으로, 제3항은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법 제18조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안전관리지원

6)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기관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로 지정 취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안전관리지원기관에 대한 관리 허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것이 법률우위의 원칙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인바 바람직한 조치로 여겨짐.

## 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안 제8조)

- 안 제8조는 자치구에서 운영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시장의 비용 지원 근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지원)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영 제12조제1항7)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안전감시원을 위촉·운영하는 경우 시장으로 하여금 예산범위 내에서 해당 자치구에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 현재는 안전감시원을 위촉·운영하는 자치구가 없고 실제로 운영한다하더라도 그 비용이 크지 않아 서울시에 큰 부담으로 작

7)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정한다.

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상위법령과의 용어통일을 위해 “안전지킴이”를 “안전감시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표] 안 제8조 수정안

본 조례안	수정안
<p>제8조(어린이놀이시설 <u>안전지킴이</u> 지원)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u>안전지킴이</u>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8조(----- 안전감시원 -----)            -----            -----            ----- <u>안전감시원</u> -----            -----            -----.</p>

## ■ 종합의견

- 동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8,612개 소(‘19년 1월말 기준)의 서울시 소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뿐만 아니라 이미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어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여겨짐.